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

Fair Fares NYC 프로그램에 관한 뉴욕시 규정 제 68 편 12 장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안내

개정안은 어떤 것입니까?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은 소득 자격 기준을 연방 빈곤 기준의 100 퍼센트에서 120 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여 Fair Fares 프로그램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청회는 2023년 10월 6일(금) 오전 10시에 Zoom(줌)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공청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줌 (영상 및 음성): <https://www.zoomgov.com/j/1618835130>

또는 www.zoom.us 접속 후 "Join a Meeting"(미팅 참여)를 클릭한 뒤, 미팅 ID 1618835130

전화(음성만): 1-646-828-7666

안내 음성이 나오면 다음 미팅 ID 입력: 1618835130

원 탭 모바일 번호: +16468287666,,1618835130#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개진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이트. NYC 규정 사이트(<http://rules.cityofnewyork.us>)를 통해 HRA 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NYCRules@hra.nyc.gov 를 통해 이메일로 서면 의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목 란에 "Fair Fares Amendments(Fair Fares 개정안)"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다음 주소로 의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HRA Rules
c/o Office of Legal Affairs
150 Greenwich Street, 38th Floor
New York, NY 10007

Fair Fares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는 점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917-639-0413 번으로 의견서를 팩스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제목 란에 “Fair Fares Amendments(Fair Fares 개정안)”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출석을 통한 의견 개진. 929- 221- 7220 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2023 년 10 월 6 일 당일까지 NYCRules@hra.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 공청회 출석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자를 호명하며 최대 3 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있습니까? 의견서 제출 기한은 2023 년 10 월 06 일 자정입니다. 우편으로 보낸 것을 포함한 의견서는 2023 년 10 월 6 일까지 HRA 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참석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공청회에서 합당한 수준으로 편의를 제공받으셔야 한다면 반드시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NYCRules@HRA.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 알려주시면 됩니다. 929-221-7220 번으로 전화를 통해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을 위해서 사전에 통지 부탁드립니다. 2023 년 9 월 29 일(금) 오전 9 시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안된 개정안에 관해 온라인으로 개진된 의견은 웹사이트 <http://rules.cityofnewyork.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과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의견의 사본, 서신으로 접수된 모든 의견의 사본, 구두로 접수된 모든 의견의 요약본이 HRA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본 HRA 개정안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뉴욕시 헌장(City Charter) 제 603 및 1043 조 본 개정안은 공개 당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HRA 의 이번 회계 연도 규정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HRA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HRA 규정은 뉴욕시 규정(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제 68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정 과정을 관할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신규 제정 또는 개정 시 HRA 는 반드시 뉴욕시 헌장 제 1043 조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공지사항 역시 뉴욕시 헌장의 제 1043(b)조의 요건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규정의 근거 및 목적에 대한 성명

뉴욕시 **Fair Fares** 프로그램은 뉴욕시 저소득 거주자들에게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교통요금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뉴욕시 거주자들은 지하철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버스 요금에서 50% 할인을 받습니다. 1회 탑승권(Pay-Per-Ride), 7일(주간) 및 30일(월간) 무제한 탑승권 옵션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Fair Fares**는 MTA Access-A-Ride 보조교통 수단 이용 요금을 50% 할인해 드립니다.

현재의 **Fair Fares** 규정은 지원자의 총 소득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FPL)의 100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득 수준을 FPL의 120%로 상향 조정합니다. **Fair Fares** 프로그램의 확대는 저소득 거주자가 일자리, 교육, 의료, 식품, 자연 및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일상적인 필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팬데믹 이후 뉴욕시의 공정한 발전과 회복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개선된 접근성은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뉴욕시 최저소득 거주자의 생활을 향상시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부서의 권한은 뉴욕시 헌장 및 뉴욕 사회보장서비스법(City Charter) 제 34 조에 의거합니다.

밑줄 표시된 부분이 신규 조항입니다. 삭제된 텍스트는 [대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 1 조. 뉴욕시 규정 제 68 편 제 12-03 조 (a)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Fair Fares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양식과 방식을 따라 증빙 서류를 비롯한 완성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2) DSS/HRA 와 뉴욕시 교통 공사의 양해 각서에 따라 Fair Fares NYC 이용 약관 양식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A) 지원자는 반드시 뉴욕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B) 지원자는 반드시 만 18 에서 64 세 이하여야 한다.

(C) 지원자의 총 소득이 FPL 의 [100] 120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D) RCNY 제 68 편 제 12-02 조 (a)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자는 DSS/HRA, NYCT 또는 기타 어떤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중복 할인 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E) 지원자는 RCNY 제 68 편 제 12-05 조 (b)항에 따라 현재 프로그램에서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영구히 자격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뉴욕시 규정 제 68 편 제 12-08 조 (a)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본 프로그램에서 카드를 일부 교통 수단에 대한 할인을 위해 계속해서 사용하는 한 DSS/HRA 와 NYCT 의 양해 각서에 따라 이용 약관에 의거 등록 연도(달력) 내에 개인당 발급할 수 있는 대체 카드의 수를 제한할 권한이 있다.